

CESCO Food Safety NEWSLETTER

2020. 1월 1호 _ Vol. 171

발행처 _ (주)세스코 식품안전연구소

주소 _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46 (주) 세스코 터치센터

대표번호 _ 02-2140-0288 http://cescofood.co.kr

식품안전 주요 NEWS

식약처, 설 명절 맞아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제수용·선물용 식품 위생관리 및 수입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오는 1월 8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설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한 설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7개 품목)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4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12월 20일)



CESCO 세스코 터치센터 전경



세스코 식품안전감사 서비스

[P1] 식품위생진단

“약속된 기준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점검

[P2] 식품안전진단

“실행해야 할 기준이 적정하고 실행이 양호한지” 평가&진단



내 사업장 식품안전 체계의 새로운 변화!!



고객 니즈에 맞춘 식품안전감사 제공

- 업종 특성, 글로벌 위생관리기준 접목
- HACCP컨설팅 know-how 접목
- Data 기반의 객관적 자료, 문제 발생 사전예방 가능



해충방제+Food 복합서비스로 시너지 효과

- 시설+설비 2개 관점 진단 ▶ 이물 관리 특화
- ▶ 이물 클레임 예방

2020년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이렇게 추진합니다!

-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 급증 식품 부정유통 단속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23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4,000여 명을 동원하여 설 명절 농산물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관원은 설 명절 정기단속을 시작으로 대보름 부럼용 농식품(2월), 학교급식업체(3월), 행락철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4월) 등 연 8회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시기별 수입급증 품목 및 사회적 관심 품목 발생, 부정유통 의심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경우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쇠고기, 건강기능식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립축산식품부, 1월 1일)

김장철 배추김치 등 원산지 부정유통 109개소 적발

- 배추김치 제조·가공·판매업체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배추, 양념류 등 김장채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인력 연인원 6,283명을 동원하여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김치 및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 취급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40,477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09개소를 적발하였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8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84건(70.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배추 17(14.2), 고춧가루 7(5.8), 기타양념류 5(4.2), 기타김치 7(5.8) 순이며, 업체별로는 음식점이 74개소(67.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공업체는 13(11.9), 도·소매 6(5.5), 통신판매 5(4.6), 기타 11(10.1)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와 양념류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단속을 하는 한편,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등 우리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립축산식품부, 12월 26일)

세스코 식품안전 라벨 스티커 3종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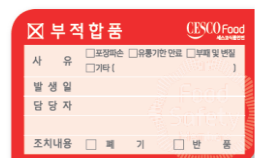
- ✓ 식재료에 대한 사용 관리 표시 라벨 솔루션
용품을 통한 편의성, 효율성 향상
- ✓ 세스코 라벨/랩 스테이션을 활용하여
전처리, 조리 식재료가 편리한 랍핑
- ✓ 사용 목적별 식품보관 관리 라벨을 활용한
표시사항 부착



[해동중 라벨] 해동중 원료용
해동 중임을 나타내는 식별, 보관시
원료 변질 예방



[유통기한 라벨] 원부재료용
유통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제
품/소분시 식재료에 대한 식별 표시



[부적합품 라벨] 부적합/반품 제품용
정상 제품으로 오인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의 구역에 보관 및 식별 표시

세스코 식품안전 솔루션 (CESCO Food Safety Solution)

2020년 식품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커피전문점 등카페인 표시 등변경되는주요 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식품 분야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시행(1월)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운영(2월)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3월) ▲대국민 수입식품안전 정보포털 서비스 개시(3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5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이력추적 의무등록 확대(6월) ▲수입중단 해외제조업소 정보 공개(6월)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제인증 시행(8월) ▲식품접객업소 판매 커피에 카페인 주의사항 등 표시 의무화(9월)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및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전면 시행(12월) 등이다.

식약처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12월 30일)

2020.1.1.일부터 닭·오리·계란에 대해 축산물이력제 시행

-학교 등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접객업자는 국내산 축산물 이력번호 공개 의무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돼지에 시행하는 축산물이력제를 2020년 1월 1일부터는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1. 사육단계 : 농장 등록, 가축 이동 신고, 사육현황 신고
2. 도축단계 : 이력번호 신청·표시, 도축 처리결과 및 거래내역 신고
 - (닭·오리) 도축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도축처리 결과를 도축이 완료된 날 신고하고, 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 판매업자 등에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 (계란)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선별포장처리결과를 선별포장이 완료된 날 신고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및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3. 포장·판매단계 : 이력번호 표시,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 신고
 - (닭·오리)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닭·오리를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도축장에서 표시한 이력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처리 결과 및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계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계란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선별포장 후 표시된 이력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4.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규모(700㎡ 이상) 식품접객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이력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메뉴 표시판, 별도 게시판 및 인터넷 누리집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게시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2월 26일)

세스코 HACCP 컨설팅 서비스



신뢰성 다수의 정부 인증 보유



고객 지향 고객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한 최적의 결과를 도출



전문성 국내 최고 전문가 그룹 및 컨설팅 실적 보유

- 식품 HACCP 컨설팅 등록 업체 (식약처)
- 축산물 HACCP 컨설팅 등록 업체 (식약처)
-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식약처 제10호)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식약처 제4호)
- 책임 컨설턴트 및 자문단 운영
- 품목 유형별 특성을 반영, 최적의 식품안전 시스템 구축
-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
- 컨설턴트 전원 상근 인력으로 책임감 있는 컨설팅 수행
- 고객 눈높이 반영 교육 및 지도 수행
- IPM(해충방제) 노하우 접목을 통한 시설 진단

과학적 근거 있다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가능해요

- 소비자정보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강화... 식품산업 활성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여 12월 3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건전한 제조·유통 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라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1.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 1)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성·안전성의 검증 방법 및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운영
 - (1단계) 홍삼,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식품은 고시 제정과 동시에 기능성을 즉시 표시
 - (2단계) 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후 일반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할 계획
 - (3단계)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기능성 표시식품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
- 2) 문헌 등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해소" 등의 표현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3)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품·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

2.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예방

- 1)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표시를 제품 주표시면에 표시하며, "이 제품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OO이 함유되어 있습니다"라는 기능성 내용을 함께 표시
- 2)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임산부·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등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를 제한할 계획

3. 기능성 표시식품 관리 강화

- 1) '기능성 표시식품'도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과 마찬가지로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표시한 기능성분 함량은 6개월 마다 품질검사를 통해 유통기한까지 기능성분의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
- 2) 기능성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영업정지 7일→15일)하고,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정보(일반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업소명, 제품명, 기능성 성분 및 함량, 기능성 표시내용' 등 자료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

식약처는 이번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정부 등이 모여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만큼 기능성 표시식품이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본 건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입법/행정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12월 31일)

세스코 표시컨설팅 서비스



비용

짙은 법령 변경에 따른
인쇄 등판 변경 최소화 유도
이슈로 인한 불용&회수
제품 최소화

인력(역량) 관리

짙은 인력 변화에 따른
관리 역량 유지
표시 관리 인력의
업무 효율성 증대

마케팅

최소 표시사항 적용으로
마케팅포인트 면적 증가
디자인 통일성 향상

【 표시 검증 】

- 표시사항, 셀링포인트
- 솔루션 제공

【 표시 작성 】

- 표시사항, 영양성분표
- 작성 및 솔루션 제공

【 납품 적합성 검토 】

- 협의 기준에 따라 제품의
- 납품 가부를 결정

【 Online/광고물 검증 】

- 셀링포인트/체험기/댓글
- 등 허위,과대 광고 검증

제품 출시 처음부터 끝까지 법규 기반의 체계적인 법규 리스크 관리

△ 주요 단속 정보

1월~2월 정기점검 일정

점검명	점검기간
○ 설 대비 성수식품 제조 · 판매업체 합동점검 - 식품(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식육세트 등) 농 · 수산물(과일, 생선 등 제수용품) 제조 · 판매업체	1.8 ~ 1.14
○ 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제조 · 판매업체 점검 - 초콜릿 · 캔디류 제조 · 판매업체	1.28 ~ 1.31
○ 식육추출가공품 등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점검(1차)	2.3 ~ 2.28
○ 1분기 온라인 인기식품 수거검사	2.10 ~ 2.21
○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업체 실태조사 및 점검(1차)	2.10 ~ 2.21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산업 NEWS

식약처, 2019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 안전관리 기본통계와 국내외 주요 통계자료가 수록된 '2019 식품의약품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위생용품관리법」이 제정 · 시행됨에 따라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 생산과 산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위해예방 분야를 추가, 총 10개 분야, 58개 세부분야, 375개 통계표를 수록하였다.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세스코식품안전' 사이트(▶[자료 다운로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12월 20일)



HACCP 의무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0호) cescoacademy.co.kr

HACCP 정기 과정 (1/8, 2/5, 2/19)

- 년 1회 HACCP 팀장이 반드시 이수 (법정 교육)
- 효율적인 HACCP 사후관리 방법, 요령 습득

HACCP 경영자 과정 (1/8, 2/5)

- HACCP 추진 시 최고경영자의 역할 인식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참석

HACCP 팀장 과정 (1/9~10, 2/6~7)

- 신규로 HACCP을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 교육
- '세스코 시뮬레이션센터'에서 현장 실습까지 한번에!



위생용품 위생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제4호) cescoacademy.co.kr

신규 / 보수 (1/31, 2/14, 3/20)

- 위생용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 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 대상 법정 의무 교육
- 신규 : 제조업/수입업/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 과정 (최초 4시간)
- 보수 :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과정 (매년 3시간)



식품 전문 교육

cescoacademy.co.kr



표시 연관 법규와 식품표시 실습 (4/21)

- 최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과 표시 연관 법령을 한번에 (식품위생법, 공전, 원산지표시법 등 기타 법령)
- 사례, 실습 위주로 원산지, 영양성분, 표시사항 작성/분석, 오류사항 찾기 실습도 한번에~

식품공장 해충 방어와 이물분석 (2/18)

- 식품공장 유래 주요 해충의 특성을 알아보고 제어법 제공
- 주요 이물의 등징방법과 취약포인트 개선방안

“ '20년 식품안전 정책 추진 전략 ”

식품안전관리 정책 추진 전략

비전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목표

“미래.환경변화 대비 식품안전 기반 조성”

핵심 전략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의무 적용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제조단계 안전성 확보 ○ 수입단계 영업자 대상 검사명령 강화 ○ 단속대상 선별시스템을 통한 잠재적 이슈 사전 예측 ○ 국가 잔류물질검사 대상 확대, 현장검사소 증설 등 농.축.수산물 유통전 안전관리 강화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안전한 유통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간편식, 배달앱, 무인매장, 온라인 판매제품 등 안전관리 강화 ○ 음식점 위생등급제 적용 활성화 ○ 영유아, 고령친화식품 등 집중 안전관리 강화 ○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및 식중독 발생 원인 조사 체계 확립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트륨 비교함량 표시, 난각 산란일자 표시 및 영업자 표시, 광고 실증제 도입 ○ 건강기능식품 표시명령제 도입으로 이상사례 예방 ○ 식품안전나라를 통한 식품안전정보 제공 ○ 영양표시 전문가 양성 및 알레르기 사고 예방 교육

“ '20년 식품안전 정책 추진 전략 ”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변경사항

국회 지적 등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 HACCP 인증업체 인증취소(one-strike-out) 대상¹⁾ 확대 및 축산물 HACCP의무적용 지속 추진
¹⁾ CCP공정 관리 미흡(가열제품 → 모든 제품), 인증 후 신규 제품 추가시 위해요소분석 미 실시 등
- 다중이용시설²⁾ 및 프랜차이즈 음식점 중심 위생등급제 우선 적용
²⁾ 공항, KTX,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음료업장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사항

- 배달음식, 가정간편식, 무인마켓, 온라인 판매 식품 등 소비트렌드 반영 검사 강화
- HACCP³⁾, 이력추적 단계적 확대⁴⁾
³⁾ 매출 100억 이상 제조업체 HACCP의무화('20.1시행)
⁴⁾ 임산부, 환자용식품 이력추적대상 단계적 확대
- 영유아, 고령친화식품 등 관리 강화

법령 개정 등 신규업무 반영

- 난각 산란일자 표시, 표시, 광고에 대한 영업자 실증제 도입 등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
- 배달앱 운영자 이물신고 통보 의무화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확대
- 공유주방 시범업체 사후관리 강화
 → 월 1회 운영실태 점검 및 정기적 수거, 검사 실시
- 동일 장소 여러 업종 신고시 시설기준 완화, 청소년 주류 제공관련 처분 면제 근거 신설 등
- 축산물 이물보고 대상 세부규정 마련
-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으로 처리 기간 내 신고수리 하지 않거나, 별도의 연장 통지가 없는 경우 허가, 신고 사무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